

구 소련 국가에서의 특허 상표의 출원 및 재등록 (完)

宋 晚 鎭
(辨 理 士)

목 차

I. 상표

1. C.I.S 공화국(12개국)
2. BALTIC STATES(3개국)
3. 각국별 재등록 / 재출원 기한

II. 특허

1. C.I.S 공화국(12개국)
2. BALTIC STATES(3개국)
3. 각국별 기한 요약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II. 특 허

1.) C.I.S. 공화국(12개국)

1) 러시아(RUSSIA)공화국

① 구소련연방의 특허법을 그대로 계승한다.

②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 등록 특허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등록이 인정된다.

③ 재등록 출원

— 1992년 10월 15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출원특허에 대해서는 구소련연방출원에서 러시아공화국출원으로의 출원국가변경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출원국가변경 신청기한 : 1993년 6월 30일까지이다.

④ 재등록출원

— 신규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명세서
- ③ 위임장

④ 우선권서류(출원일로부터 3개월내, PCT의 경우는 불필요)

2) 우크라이나(UKRAINE)공화국

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

② 우크라이나특허청 활동개시한다.

③ 우선권제도도입(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④ 재등록출원

—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특허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재등록출원기한 : 1993년 3월 18일까지이다.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와 특허등록증사본 1통
- ③ 위임장 2통(추후제출불가)

⑤ 재출원신청

- 1991년 12월 24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 출원특허(PCT 국내단계포함)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제한 : 1993년 3월 18일까지이다.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특허출원사본 1통
- ③ U.S.S.R.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
- ④ 1991. 12. 25. 이전의 심사결과통지서, 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 사본

⑤ 사정시 사정서 사본

- ⑥ 위임장 2통(추후제출불가)

⑦ 신규출원

- 신규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어로 된 명세서
- ③ 선언서
- ④ 양도증
- ⑤ 위임장 1통(추후제출불가)
- ⑥ 우선권서류

3) 그루지아(GEORGIA)공화국

- ① 관납료 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
- ② 그루지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③ 우선권제도도입(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 ④ 재등록출원
 -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특허청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재등록출원기한 : 1993년 9월 1일 까지이다.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등록증사본 1통
- ③ 위임장 1통
- ⑤ 재출원신청

-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 출원특허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기한 : 미정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특허출원서사본 1통
- ③ U.S.S.R.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
- ④ 1991. 12. 25. 이전의 심사결과통지서, 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 사본
- ⑤ 사정시 사정서 사본
- ⑥ 위임장 2통
- ⑥ 신규출원
 - 신규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그루지아어로된 명세서
 - ③ 위임장 1통
 - ④ 우선권 서류

4) 카자흐(KAZAKHSTAN)공화국

- ① 관납료 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
- ② 카자흐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③ 우선권제도도입(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 ④ 재등록신청
 -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특허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재등록출원기한 : 1993년 12월 1일 까지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등록증사본 1통(공증필요)
 - ③ 위임장 2통
- ⑤ 재출원신청
 -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 출원특허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기한 : 1993년 3월 1일 까지이다.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출원서사본 1통
 - ③ U.S.S.R.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
 - ④ 1991. 12. 25. 이전의 심사결과통지서, 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사본
 - ⑤ 사정시 사정서 사본
 - ⑥ 위임장 2통
 - ⑦ 신규출원
 - 신규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카자흐어 또는 러시아어로된 명세서
 - ③ 위임장 1통
 - ④ 우선권 서류
- 5) 우즈베크(UZBEKISTAN)공화국
- 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
 - ② 우즈베크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③ 재등록출원
 -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특허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재등록출원기한 : 1993년 7월 1일 까지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등록사본 1통(공증요)
 - ③ 위임장 1통
 - ④ 재출원신청
 -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등록사정을 받은 USSR 출원특허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기한 : 1993년 7월 1일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출원서사본 1통
 - ③ U.S.S.R.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
 - ④ 사정시 사정서사본 1통
 - ⑤ 위임장 2통
 - ⑥ 신규출원

- 신규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우주베크어 또는 러시아어로 된 명세서
 - ③ 위임장 1통
- 6) 벨라루스(BELAURS)공화국
- 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다.
 - ② 벨라루스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③ 재등록출원
 -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특허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함.
 - 재등록출원기한 : 1994년 2월 5일 까지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미정
 - ④ 재출원신청
 -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계류중인 USSR 출원특허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기한 : 1993년 8월 5일까지이다.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미정
 - ⑤ 신규출원
 - 신규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명세서
 - ③ 위임장
 - ④ 우선권서류(출원일로부터 3개월내, PC T의 경우는 불필요)

7) 몰도바(MOLDOVA)공화국

 - ① 관납료규정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 ② 몰도바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③ 재등록출원 / 재출원신청
 - 구소련연방에 기등록된 등록특허 및 현재 출원계류중인 USSR출원 특허에 대한 재등록 및 재출원의 효과인정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 ④ 신규출원
 - 신규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명세서

- ③ 위임장
- ④ 우선권서류(출원일로부터 3개월내, PCT의 경우는 불필요)

8) 아제르바이잔(AZERBAIJAN)공화국, 아르메니아(ARMENIA)공화국, 키르기스(KIR-KISTAN)공화국, 타지크(TAJIKISTAN)공화국, 투르크메니(TURKMENISTAN)공화국
- 현재 특허법 제정 작업중임.

2. BALTIC STATES(3개국)

1) 에스토니아(ESTONIA)공화국

- ① 에스토니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② 현재 특허법 제정 작업중이다.

2) 라트비아(LATVIA)공화국

- ① 라트비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② 우선권제도도입(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③ 재등록출원

- 구소련연방에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등록된 USSR 등록특허에 대해서는 재등록 하여야 한다.
- 재등록출원기한 : 1993년 6월 30일 까지이다.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등록증사본
- ③ 위임장 1통
- ④ 재출원신청

-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현재 출원계류중인 USSR 출원특허(PCT 출원 및 PCT 출원 중 거절된 것 포함)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을 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기한 : 1993년 6월 30일 까지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출원서사본 1통

- ③ U.S.S.R.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
- ④ 심사결과통지서, 의견서 등 출원관련서류사본

⑤ 위임장 2통

⑤ 신규출원

- 신규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라트비아어로된 명세서
- ③ 위임장 1통
- ④ 우선권 서류

3) 리투아니아(LITHUANIA)공화국

- ① 리투아니아특허청 활동개시한다.
- ② 우선권제도도입(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③ 재등록출원

- 구소련연방에서 기등록된 USSR등록특허에 대해서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재등록출원기한 : 1993년 4월 30일 까지이다.

- 재등록출원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명세서 및 특허등록증사본 1통(공증요)

③ 출원번호 통지서 사본(공증요)

④ 위임장 1통(공증요)

④ 재출원신청

- 1990년 1월 1일 이후에 구소련연방에 출원하여 1992년 1월 31일 까지 출원계류중인 USSR출원특허 및 1992년 1월 30일 전에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재출원신청하여야 원출원이 인정된다.

- 재출원신청기한 : 1993년 4월 30일 까지이다.

- 재출원신청시 구비서류 :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 ② U.S.S.R.의 특허출원서사본 1통(공증요)
- ③ U.S.S.R.의 출원번호통지서사본 1통(공증요)

④ 심사결과통지서, 의견서, 등록사정서 등
출원관련서류사본(공증요)

⑤ 위임장 1통(공증요)

⑥ 신규출원

- 신규특허출원시 구비서류 :

①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 주소

② 리투아니아어로 된 명세서

③ 국제분류

④ 위임장 1통(공증요)

⑤ 양도증(공증요)

⑥ 우선권 서류

9. 1.), 카자흐(1993. 2. 1.), 우즈베크(1993. 7. 1.), 벨라루스(1994. 2. 5.), 라트비아(1993. 6. 30.), 리투아니아(1993. 4. 30.)

2) 재출원신청기한

러시아(1993. 6. 30.), 우크라이나(1993. 3. 18.), 카자흐(1993. 3. 1.), 우즈베크(1993. 7. 1.), 벨라루스(1993. 8. 5.), 라트비아(1993. 6. 30.), 리투아니아(1993. 4. 30.)
<♣>

3. 각국별 기한 요약

1) 재등록출원기한

우크라이나(1993. 3. 18.), 그르지아(1993.

「여론 수렴함」 및 「여론 수렴창구」 이용안내

특허청에서는 '92. 6. 11부터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체계를 추진코자 「여론 수렴함」 및 「여론 수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허행정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개선할 점, 특허청에 대한 건의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여론 수렴함」 및 「여론 수렴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수렴함」 설치장소

: 본관 11층 등록과, 14층 복도, 17층 민원안내실 및 출원과 복도

: 별관 현관입구

「여론 수렴창구」: 14층 행정관리담당관실 내

* 설명으로 제출된 여론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특허행정 제도개선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 허 청